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20호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24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일반트랙에 한함)

□ **지원내용** : 543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일반인증 486개, ESG·탄소중립 인증 57개

□ 트랙별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패스트트랙	○ **(일반인증)**【붙임1】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패스트트랙 인증 (5개 인증 4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일반트랙	○ **(일반인증)**【붙임1】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 획득 비용 일부 지원 - (고비용인증)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 **(ESG·탄소중립 인증)**【붙임2】ESG·탄소중립 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 **(원전 인증)** ASME N관련 코드, NRC인증 등 원전분야 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 원전분야는 별도체크하여 신청하며 관련성을 입증할 견적서 제출 필요 ○ 【붙임1】과 【붙임2】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패스트트랙 지원대상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동일하게 일반트랙 지원대상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지원한도(공통)

패스트트랙 & 일반트랙	○ **(일반인증)**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일반인증 한도 외 기업당 최대 2건의 인증 및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추가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지원
건수</th><th rowspan="2">기업당
지원한도
(천원)</th><th colspan="3">전년도 매출액 기준</th><th rowspan="2">인증
분야별
개별한도</th></tr>
<tr><th>100억원
미만</th><th>300억원
미만</th><th>300억원
이상</th></tr>
<tr><td>일반인증</td><td>4건</td><td>연간 100,000</td><td rowspan="2">70%</td><td rowspan="2">60%</td><td rowspan="2">50%</td><td rowspan="2">붙임 3, 4
참조</td></tr>
<tr><td>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td><td>추가
2건</td><td>추가 50,000</td></tr>
<tr><td colspan="8">(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붙임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ESG·탄소중립인증 : “붙임 2”의 인증신청 기업은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견적서 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원전분야 인증 : 원전분야(ASME N코드, NRC 등) 견적서 제출 필요(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개별한도 적용)</td></tr>
</table>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붙임 3, 4】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 **(Two-Track 운영)** 수요가 많고, 국내에서 전반적인 대응이 가능한 5종(4개 분야) 인증에 대해 패스트*(상시접수 및 간이심사)/일반 트랙으로 구분

* 패스트트랙: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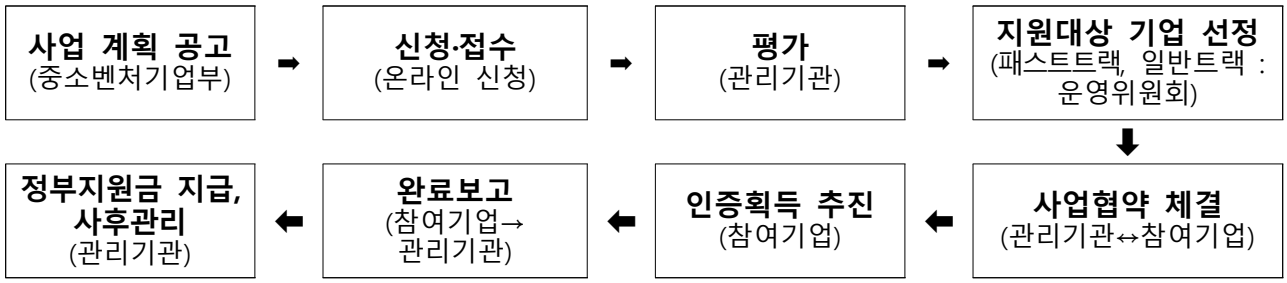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23년 이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 수행기간(2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

○ (신설) 직전 5개년('18년 ~ '22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3.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5】 구비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업로드(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는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

○ **대상인증** : 【붙임 1】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인증

○ **신청기간** : 2023년 8월 1일(화) 09:00 ~ 8월 31일(목) 18:00까지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선정 기간**

<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

○ 2023년 9월 1일 ~ 9월 27일

* 평가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 : 【붙임 6, 7】 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른 서면 평가를 실시

○ 관리기관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 신청마감일 기준 제출(유효)된 서류에 의함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가점부여*(각 5점, 최대15점) :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 기업, AEO공인기업, 신남방·신북방 인증 신청기업, ESG·탄소중립 인증 신청기업, 원전분야 인증, 소부장으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상기 사업 참여 중인 기업에 가점 부여(단,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구축 완료기업, 공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 가점 부여)

□ **선정**

< 패스트트랙 >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수요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일반트랙 3차 예산 활용)

< 일반트랙 3차 >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단, 관리기관에 의해 고비용인증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전국경쟁 실시)

* 신청기업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구분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5. 기타 유의 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23년 이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 교차신청 시 동시신청이 최대 4건(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은 6건)을 초과할 수 없음

□ 패스트트랙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시험·인증·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 3, 4】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ESG·탄소중립 인증은 관련기관*에서 추천 또는 활용하는 인증을 기반으로 분류한 자료이므로, ESG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평가 시 인증활용도가 다를 수 있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회계표준위원회(SASB) 등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일반트랙 참여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2023.2.14.)” 및 동 “사업 운영지침(2023.8.)”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문의처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붙임 1】

국가별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486개)

□ 국가별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5개)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유럽(EU)	CE (유럽공동체마크)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 (유럽화장품등록)	
일본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국제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국가별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82개)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FA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미국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미국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미국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미국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미국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미국	CADR (청정공기공급률)	CARB (미국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미국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도료라벨인증)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미국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미국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미국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eld Evaluation (미국현장설치승인평가)
미국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미국	Gluten Free (글루텐안전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미국	Greenguard (실내공기질시험·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Halogen Free (할로겐안전인증)
미국	HIRF (고강도전자기장)	HPD (미국친환경건축재료유효성검증)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미국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미국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461 (미군전자파적합성규격)	MIL-STD-810 (미국육군장비규격)
미국	MIL-STD-901 (미국해군장비규격)	NB mark (미국압력용기압력완화장치인증)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미국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PA (미국화재방재청인증)	NFRC (창호단열규정)
미국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미국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미국	NRC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NTEP (미국측량프로그램)
미국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미국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상업용주방기기인증)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미국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미국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국가별	규격인증		
유럽(EU)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유럽(EU)	CCA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유럽(EU)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DNV (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유럽(EU)	ECARF (유럽알러지연구재단)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Eco-Labeling (EU환경마크)
유럽(EU)	EFSA (유럽식품안전청)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유럽(EU)	EASA (유럽항공청인증)	EN 14350 (어린이음용장비규정)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유럽(EU)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유럽(EU)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
유럽(EU)	FIBC (산업용포장재정전분류)	Green Dot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유럽(EU)	Nordic Swan (유럽에코라벨)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인증)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유럽(EU)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유럽(EU)	Seedling (생분해인증제도)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네덜란드	N-PTI (네덜란드디젤자동차배출미립자개수농도측정기형식승인)		
덴마크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Drop Mark (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	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독일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독일	DASt-Guideline (독일철강건설위원회표준)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독일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
독일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국가별	규격인증		
독일	LTF (독일감항성시험)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독일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영국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CPA (영국상업용제품인증)
영국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영국	SCPN (영국화장품등록)	UKCA (영국제품적합인증마크)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ACS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프랑스	DGCCRF (프랑스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선급-GTT)
프랑스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RISE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노르웨이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Swissmedic (스위스의료기기등록)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벨라루스	BNOS (벨라루스유기농표준)		

국가별	규격인증		
일본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CHAdeMO (일본전기차급속충전기인증)
일본	CMJ 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일본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일본	JCMVP (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FSL (일본식품위생법-완구)
일본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A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JIS (일본표준규격)
일본	JISEC (IT시큐리평가및인증)	JPEx (일본방폭인증)	JSFL (일본식품위생법)
일본	JWWA (일본상수도협회)	NK (일본선급협회)	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
일본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SIAA (일본항균제품기술협의회)
일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
일본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신북방)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러시아 (신북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러시아 (신북방)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러시아항공조명인증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러시아 (신북방)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러시아의료기기연방보건감독청)		
말레이시아 (신남방)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말레이시아 (신남방)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보강용강선규격)	NPRA (말레이시아의약품관리청인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PRIS (멕시코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국가별	규격인증		
멕시코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대만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Taiwan Green mark (환경보호인증마크)	TFDA (대만의료기기)
대만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태국 (신남방)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브라질	BRAZIL NR (브라질노동복지부규제)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브라질	브라질농약약품등록		
사우디아라비아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터키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신남방)	BCA Green Mark (싱가포르건설청그린마크)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싱가포르 (신남방)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HSA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싱가포르 (신남방)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싱가포르 (신남방)	SFA (싱가포르식품시설등록)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아르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NTI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신남방)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인도 (신남방)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DCG (인도식약청)
인도 (신남방)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인도 (신남방)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인도 (신남방)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인도네시아 (신남방)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신남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중국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중국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중국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중국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중국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중국	NIM (중국계량과학원)	NMPA (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중국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중국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신북방)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캐나다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캐나다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국가별	규격인증		
캐나다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INVIMA (콜롬비아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RETIE (변압기강제인증)
콜롬비아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폴란드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폴란드농약약품등록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신남방)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필리핀 (신남방)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라오스 (신남방)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신남방)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베트남 (신남방)	베트남 비료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DAV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베트남 (신남방)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호주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호주	AGA (호주가스안전인증)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SD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호주	PS (호주개인보호장비)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호주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국가별	규격인증		
호주	호주농약약품등록		
홍콩	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	HKSM (홍콩제품안전마크)	OFC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NRCS (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
이란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리트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 (아랍에미리트안전인증)	EQM (아랍에미리트제품적합성마크)
아랍에미리트	TRA (아랍에미리트유무선통신인증)		
이스라엘	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우크라이나 (신북방)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미얀마 (신남방)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이집트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뉴질랜드	BIOGRO (뉴질랜드유기농인증)	BRANZ (뉴질랜드건축자재인증)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뉴질랜드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바레인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캄보디아 (신남방)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수출적합인증서		

국가별	규격인증		
국제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국제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SC (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국제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규격)
국제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국제	CC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국제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 (구.CU-유라시아적합성인증)	EFfCI (유럽화장품원료협회)
국제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
국제	FIDO (생체인증)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국제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국제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국제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국제	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CC HbA1c (당화혈색소측정검출기기인증)
국제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 (국제노동기구)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국제	IPA (클린룸인증)	ISEGA (유럽식품접촉안전성인증)	ISO 11119-3 (가스실린더설계및시험)
국제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1434 (자동차사이버보안)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국제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 (용접ISO인증)
국제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제품인증)
국제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국제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MSC-CoC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국제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인증)	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국제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국제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국제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REPULPABLE AND RECYCLING CERTIFICATION (종이및펄프재활용인증)
국제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QF (식품품질안전)
국제	STANAG (NATO군사장비표준화협정)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국제	TISAX (자동차정보보안평가)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국제	UN38.3 (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	Visa PayWave (신용카드단말기인증)
국제	WHO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국제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1)]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21개 기관[(2)]이 인정을 받음

(1)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
https://www.osha.gov/nationally-recognized-testing-laboratory-program/current-list-of-nrtls

(2) NRTL인정 21개기관: ARL, BACL, BVCPS, CSA, DEKRA, Eurofins E&E NA, FM, IAPMO, ITSNA, LTC, NNA, NSF, QAI, QPS, SGS NA, SPTL, SWRI, TUV Rheinland NA, TUV SUD America, TUV SUD PSG, UL

※ 위 지원대상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사업운영지침 별첨 1-4호]를 작성하여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수출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인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시스템 인증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공고 인증 중 ISO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인증*은 납품처의 요구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납품처의 요구는 신청시 제출, 해당인증 요구가 명시된 바이어의 인증요구 레터, Purchase order, Offer sheet 등)

  * ISO 27017(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ISO 27018(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붙임 2】

ESG·탄소중립 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57개)

E (환경) : 45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환경경영 (2)	환경경영체계(1)	ISO 50001 (에너지경영)		
	환경 평가(1)	EPEAT (환경성능 기준)		
환경관리 (25)	온실가스 배출관리 (4)	ISO 14064 (온실가스)	EN 16258 (운송 온실가스)	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 중립)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탄소발자국)		
	물/폐수 관리(3)	CWA (수자원 보호)	Water Footprint Network (물 발자국)	Water Sense (물 효율)
	폐기물/재활용 관리 (12)	Bluesign (유해물질)	Cradle to Cradle (자원순환)	E-Stewards (폐기물)
		ECO PASSPORT (유해물질)	GRS (재생물질)	Higg Index (의류산업환경부담지수)
		OEKO-TEX® Standard 100 (유해물질)	RCS (재활용)	Responsible Recycling Practices (재활용)
		REACH (유해물질)	RoHS (유해물질)	ZDHC MRSL(Lv 1이상) (유해물질제로배출규제)
	에너지 효율/관리 (6)	AHAM (에너지효율)	DEC (에너지효율)	ENERGY STAR® (에너지효율)
		EPC (에너지효율)	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에너지 효율)	HERS (에너지평가)
환경성과 (18)	신재생·대체 에너지 (4)	Green-e® Energy (재생에너지)	ISCC (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RECs (재생에너지)
		RSB (바이오연료)		
	친환경 제품, 건물 (7)	BREEAM® (친환경건축)	GOTS (친환경)	Green Globes (친환경건축)
		LEED®(친환경건축)	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 (친환경건축)	OCS (유기농)
		USDA (유기농)		
	자연 생태계 보호 (7)	EPA (환경보호)	FSC (산림경영)	GRSB (토양보호)
		PEFC (산림보호)	Rainforest Alliance (기후변화)	RSPO (환경보호)
		RTRS (환경영향감소)		

S (사회) : 8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데이터보안(1)	정보보안(1)	ISO/IEC 27001 (정보보호)		
공급망(3)	공급망관리(3)	ASI (알루미늄 소싱)	CCS (재료흐름)	RWS (공급망관리)
근로자(3)	인권 및 산업안전(3)	ISO 45001 (안전보건)	SA8000 (근로자보호)	ISO 16000-40 (실내공기)
소비자(1)	고객만족(1)	ISO 10004 (고객만족)		

G (지배구조) : 2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윤리경영 정책(2)	윤리·부패방지 경영(2)	ISO 37001 (부패방지)	ISO 37301 (준법경영)	
	지속가능성 공개 (0)			
	독립성 확보 (0)			

ESG (정책) : 2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ESG정책(2)	ESG정책(2)	Ecovadis (지속가능성 평가)	Fair Trade (공정무역)	

※ 위 지원대상 이외의 ESG·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사업운영지침 별첨 1-4호]를 작성하여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RoHS는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분야코드 DoC-ROHS)에 한하여 ESG·탄소중립인증으로 분류되며, CE인증획득을 위한 RoHS추가 코드(R)는 CE인증으로 판단함

* (예시) 동일한 A 제품을 2건(유럽 CE, 국제 RoHS)으로 분리 신청한 것은 인정 불가

※ REACH는 각 국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EU/UK REACH, CHINA REACH, TSCA, KKDIK)를 포함하여 지원

※ ESG·탄소중립 인증은 관련기관*에서 추천 또는 활용 하는 인증을 기반으로 분류한 자료이므로, ESG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평가시 인증활용도가 다를 수 있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회계표준위원회(SASB) 등

※ 국내활용을 위한 국내기준에 따른 국내인증획득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됨

* (예시) KS I ISO 14064 등

※ ISO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인증*은 납품처의 요구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납품처의 요구는 신청시 제출, 해당인증 요구가 명시된 바이어의 인증요구 레터, Purchase order, Offer sheet 등)

* ISO 45001(산업안전보건), ISO 27001(정보보호), ISO 50001(에너지경영), ISO 10004(고객만족), ISO 37001(부패방지), ISO 37301(준법경영), ISO 16000-40(실내공기질), SA8000(근로자보호)

【붙임 3】

패스트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유럽	CE	전자기기 (LVD, EMC, RED)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	○	○	600	2,200	1,900	1,600	DoC-CEEL1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	○*	○	600	4,400	3,800	3,200	DoC-CEEL2
			(RED)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	○	○	2,200	8,200	7,100	5,900	DoC-CEEL3
		기계 (MD)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3,900	3,400	2,800	DoC-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5,400	4,700	3,900	CoC-CEMD2
		EU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3,500	3,000	2,5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1,100	1,000	800	B(추가코드)
	CPNP	화장품	-	○	○	500	2,400	2,200	1,800	DoC-CPNP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일본	PSE	전기전자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600	3,500	3,000	2,500	DoC-PSE1
			특정전기용품 (인증서 발급)	○	○	800	5,700	4,900	4,100	CoC-PSE2
미국	FCC	Unintentional radiators	EMI(전자기파 간섭 시험) - 무선송신기능이 없는 경우	○	○	400	2,000	1,700	1,400	DoC-FCC1
		Intentional radiator	무선송신기능이 있는 경우	○	○	1,600	5,600	4,800	4,000	CoC-FCC2
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	1,400	7,000	6,000	5,000	CoC-CB

*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은 인증비용 인정 불가

※ 패스트트랙(상시모집)은 상기 지정된 인증(분야)의 신청만 가능하며, 일반트랙 인증으로 변경 불가

※ 지정된 인증(분야) "이외의 인증(분야)", "고비용인증" 및 "비 공고 규격인증"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함

※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교차신청 가능하나, 패스트트랙 또는 일반트랙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 불가(교차신청 시 동시신청이 최대 4건(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은 6건)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 비율로 지원됨

※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인정함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붙임 4】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유럽	CE/ UKCA	의료기기 (MDR)	Class Ⅰ	○	○	6,300	10,600	9,100	7,600	DoC-CEME1
			Class Ⅱ (Class Is, Im, Ir 포함)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CEME2
			Class Ⅲ	○	○	18,000	21,000	18,000	15,000	CoC-CEME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2,500)	-	-	-		-	-
		체외 진단기기 (IVDR)	Class A	○	○	6,300	10,600	9,100	7,600	DoC-CEIV1
			Class B, C (Class A sterile 포함)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CEIV2
			Class D	○	○	18,000	21,000	18,000	15,000	CoC-CEIV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2,500)	-	-	-		-	-
		방폭기기 (ATEX)	-	○	○	5,000	21,000	18,000	15,000	CoC-CEEX
		압력용기 (PED)	-	○	○	1,500	7,000	6,000	5,000	CoC-CEPED
		건설자재 (CPR)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는 경우	○	○	1,200	5,800	5,000	4,200	DoC-CECPR1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5,000	13,000	11,200	9,300	CoC-CECPR2
		완구 (TOY)	-	○	○	600	2,900	2,500	2,100	DoC-CETOY
		기타제품군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600	3,900	3,400	2,800	DoC-CEETC1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	○	2,800	9,100	7,800	6,500	CoC-CEETC2
	UKCA	전자기기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	○	○	600	2,200	1,900	1,600	DoC-UKEL1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	○(1)	○	600	4,400	3,800	3,200	DoC-UKEL2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	○	○	2,200	8,200	7,100	5,900	DoC-UKEL3
		기계류	부칙 2, Part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3,900	3,400	2,800	DoC-UKMC1
			부칙 2, Part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5,400	4,700	3,900	CoC-UKMC2
	CE/ UKCA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3,500	3,000	2,5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1,100	1,000	800	B(추가코드)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SCPN	화장품	-	○	○	500	2,400	2,200	1,800	DoC-SCPN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e-mark	자동차관련 부품	-	○	○	2,800	7,800	6,700	5,600	CoC-EMR
중국	NMPA	의료기기	CLASS Ⅰ	-	○	10,000	11,200	9,600	8,000	DoC-NPME1
			CLASS Ⅱ	○	○	30,000	21,000	18,000	15,000	CoC-NPME2
			CLASS Ⅲ	○	○	30,000	21,000	18,000	15,000	CoC-NPME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5,000)	-	-	-	-	-	-
		화장품	비특수 제품 등록	-	○	1,800	3,700	3,200	2,700	DoC-NPCS1
			영·유아 제품 등록	-	○	3,000	7,500	6,500	5,400	DoC-NPCS2
			특수 제품 허가	-	○	3,000	7,600	6,600	5,500	CoC-NPCS3
			자외선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5,600	4,800	4,000	U (추가코드)
			미백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13,400	11,400	9,500	W (추가코드)
			효능·효과 시험: 보습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2,100	1,800	1,500	M (추가코드)
			효능·효과 시험: 1 개 시험하는 경우 (보습 제외)	-	○	-	7,000	6,000	5,000	E1 (추가코드)
			효능·효과 시험: 2 개 이상을 시험하는 경우 (보습 제외)	-	○	-	14,000	12,000	10,000	E2 (추가코드)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건당)	(800)	-	-	-	-	-	-
			안전성평가보고서 인정한도(건당)	-	(800)	-	-	-	-	-
	CCC	공산품, 전기전자 등	중국강제인증	○	○	3,000	8,400	7,200	6,000	CoC-CCC
	중국자율 제품안전 인증	공산품	-	○	○	3,000	7,000	6,000	5,000	CoC-CVC
	GB Test	기타제품군	GB Test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1,400	1,200	1,000	DoC-GBT
	중국식품 수화인등록	식품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라벨링	-	○	1,500	1,100	1,000	800	DoC-SRFD1
미국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공장등록)	○	-	600	6,300	5,400	4,500	DoC-FDME1
			510(k) (시판 전 신고)	○	○	5,000	21,000	18,000	15,000	CoC-FDME2
			PMA (시판 전 승인)	○	○	5,000	21,000	18,000	15,000	CoC-FDME3
		OTC	OTC Facility Fee (일반의약품 시설등록)	○	-	1,000	22,800	19,600	16,300	DoC-FDOTC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기타제품군	등록 또는 검사	○	○	1,000	1,500	1,300	1,100	DoC-FDETC
		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1,000)	-	-	700	600	500	RP2 (추가코드)
	NRTL	공산품	부품 또는 제품 등 기기	○	○	1,000	12,600	10,800	9,000	CoC-NRTL1
		원자재	플라스틱, 건자재 등 원재료	○	○	800	9,900	8,500	7,100	CoC-NRTL2
	ASME	압력용기/ 보일러 등	U, S, PP 등 Stamp 등록비용	○	-	2,000	4,200	3,600	3,000	CoC-ASME
			AIA, Team Service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	○	3,000	16,800	14,400	12,000	A (추가코드)
			비파괴검사 비용 인정한도(기업당)	-	(1,500)	-	-	-	-	-
일본	일본무선통신 인증	무선기기	무선 설비의 공사 설계 인증, 무선단말기의 설계 인증 등	○	○	1,300	7,000	6,000	5,000	CoC-JAMC
국제	REACH (1)	공산품	SVHC 및 후보물질 비사용 증명용 시험	-	○	600	3,900	3,400	2,800	DoC-RCH1
		화학물질	본 등록	○	○	5,000	16,700	14,400	12,000	CoC-RCH2
	RoHS(2)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3,500	3,000	2,500	DoC-ROHS
	HALAL (3)	식품/ 화장품	식품, 화장품 등 심사대상 시설 단위당	○	○	8,000	11,200	9,600	8,000	CoC-HAL
	IECEx	방폭제품	-	○	○	5,000	21,000	18,000	15,000	CoC-IECX
	화장품 허가	화장품	동남아시아 화장품허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	○	400	700	600	500	CoC-COS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건당)	(300)	-	-	-	-	-	-
	선급	Inspection Certificate(검사)		○	○	600	2,500	2,200	1,800	CoC-SHIP1
		Type Approval(형식 승인)		○	○	1,200	8,700	7,600	6,300	CoC-SHIP2
		Approval of Manufacturer(공장승인)		○	○	1,200	5,600	4,800	4,000	CoC-SHIP3
	WPS	용접	용접절차 인증	○	○	600	3,200	2,800	2,300	CoC-WPS
	시스템 인증	ISO 45001, ISO 27001, ISO 27017, ISO/IEC 27018, ISO 50001, ISO 10004, ISO 37001, ISO 37301, ISO 16000-40, SA8000		○	-	1,000	3,900	3,400	2,800	CoC-ISO
기타		인증서 미발행		○	○	1,000	4,600	4,000	3,300	DoC-ETC1
		인증서 발행		○	○	2,800	9,800	8,400	7,000	CoC-ETC2
		법정대리인 선임이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 인정한도 (기업당)		(1,000)	-	-	-	-	-	-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고비용인증(4)				○	○	7,000	100,000			H (추가코드)
		원전분야 인증		○	○	-	150,000			N (추가코드)
ESG·탄소중립 인증(5)				○	○	-	150,000			E (추가코드)

(1) REACH : REACH는 각 국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EU/UK REACH, CHINA REACH, TSCA, KKDIK)를 포함하여 지원

(2)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3) HALAL인증은 심사대상 시설 단위 및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건수를 추가하는 인증임

(4) 고비용인증 :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0,000천원 이상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한도금액은 100,000천원 적용 가능(단, 신청당시 사전 견적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고비용인증으로 협약체결 하였으나, 인증획득완료 후 일반인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패스트트랙 또는 일반트랙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을 따름

(5) ESG.탄소중립 인증의 경우, 시험.인증기관.등록 컨설팅기관 견적서 제출시 최대 150,000천원 내에서 정부지원금 한도 적용(단, 견적서 미제출시 인증별 개별한도 적용)

※ 컨설팅인정비용은 정해진 분야코드를 따르되 분야코드 추가의 경우 더 높은 비용을 따름(단, ASME인증의 경우 AIA 등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코드 A의 인정비용을 따름)

※ 참여 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단,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50,000천원까지 가능)

※ 인증 Scheme 상 제품에 따라 CoC와 DoC로 구분되는 인증의 경우, DoC인증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CoC인증의 기타인증분야로 신청가능

※ CSA, TUV 인증 중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비율로 지원됨

※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인정함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 완료보고시 건당 10,000천원 이상 컨설팅비용 인정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일지 제출 필수

※ 일반트랙은 상기 지정된 인증(분야)의 신청만 가능하며, 패스트트랙의 인증으로 변경 불가

※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교차신청 가능하나, 패스트트랙 또는 일반트랙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 불가(교차신청 시 동시신청이 최대 4건(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은 6건)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붙임 5】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필수 업로드)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ISO 기반 시스템인증 신청시 : 신청인증 요구가 명시된 납품처 요구서(Offer sheet, letter 등)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 가능성, 의지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	- 제출생략
	매출액 증감률	- 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수출증가율	- 제출생략
	수출실적 증가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수출업무 담당자 역량	- 교육 수료증 제출('21년, '22년 및 당해 연도 교육(온라인) 수료증)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경우 재직증명서(당해 연도 발급본)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수출준비 활동	- 외국어카탈로그 사본1부, 온라인주소 기재(자사 홈페이지, 제품홍보 동영상)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선정기업	- 제출생략
가점	AEO공인기업	- 관세청에서 발행한 AEO공인인증서 1부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 기업, 신남방·신북방 인증 신청기업, ESG·탄소중립 인증 신청기업, 원전분야 인증, 소부장으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 제출생략
기타	원전인증 신청기업	- 원전관련 인증임을 확인 가능한 시험·인증기관 견적서
	ESG·탄소중립 인증 신청기업	- [붙임 2] 해당 인증의 견적서(한도금액 설정용, 시험·인증기관 및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견적서 인정) * 미 제출시 [붙임 4] 인정/한도기준 적용
	ISO 45001(산업안전보건), ISO 27001(정보보호), ISO 27017(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27018(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50001(에너지경영), ISO 10004(고객만족), ISO 37001(부패방지), ISO 37301(준법경영), ISO 16000-40(실내공기질), SA8000(근로자보호)	- 해당인증 요구 명시된, 인증요구 레터, Purchase order, Offer sheet 등에 해당인증 요구가 명시 되어있어야 함

【붙임 6】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신청기업 평가표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구분</th><th>배점</th><th>평가방법</th><th>점수</th></tr>
<tr><td rowspan="4">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50점)</td><td>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td><td>25점</td><td>•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시 (25점)
- 50% 이상 제출시 (20점)
- 50% 미만 제출시 (15점)
- 미제출시 (10점)</td><td></td></tr>
<tr><td>해외규격인증
획득 노력</td><td>10점</td><td>•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2회 이상(5점), 1회(3점), 이수이력 없음(2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컨설팅* 지원 참여이력 (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1회 이상(5점), 참여이력 없음(3점)
* 현장방문형 컨설팅, 공급망실사 컨설팅 등</td><td></td></tr>
<tr><td>매출액 증감률</td><td>15점</td><td>•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10% 이상(15점), 5% 이상(12점), 0% 이상(9점), 감소(6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 중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12점</td><td></td></tr>
<tr><td colspan="3">튼튼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5점 만점 부여</td><td></td></tr>
<tr><td rowspan="4">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50점)</td><td>수출 증감률</td><td>20점</td><td>• 직접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table>
<tr><td>구분</td><td colspan="4">전년도 직접수출 증감률</td></tr>
<tr><td>분포
구간 (%)</td><td>0이하</td><td>40이하</td><td>100이하</td><td>100초과</td></tr>
<tr><td>점수</td><td>8</td><td>12</td><td>16</td><td>20</td></tr>
</table>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12점부여</td><td></td></tr>
<tr><td>수출실적 증감</td><td>10점</td><td>• 직접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10점), 10만불 이상(7점), 0불 이상(5점), 감소(3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5점부여</td><td></td></tr>
<tr><td>수출국 증가</td><td>10점</td><td>•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10점), 2개국 이상(7점), 1개국 이상(5점), 증가 없음(3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5점부여
** 관세청 직접수출액 확정통계 조회기준</td><td></td></tr>
<tr><td>신시장 진출</td><td>10점</td><td>•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 및 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10점), 1개국(6점), 신규수출국 없음(3점)
* EU인증(CE, CPNP)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IECEE) 신청시 가점 2점 부여(내수기업에 한함)</td><td></td></tr>
<tr><td colspan="3">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유효기간 내) 선정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평가시 가점 20점 부여
단, 가점을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점수는 50점을 넘을 수 없음</td><td></td></tr>
<tr><td colspan="2">총 계</td><td>100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지방소재기업(3점)</td><td>3점</td><td>-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td><td></td></tr>
<tr><td colspan="2">가점(15점)</td><td>15점</td><td>-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 기업, AEO공인기업, 소부장으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건당 5점, 최대 15점)</td><td></td></tr>
</table>

【붙임 7】

2023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신청기업 평가표

<table>
<tr><th>평가
항목</th><th colspan="2">평가구분</th><th>배점</th><th>평가방법</th><th>점수</th></tr>
<tr><td rowspan="4">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50점)</td><td colspan="2">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td><td>25점</td><td>•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시 (25점)
- 50% 이상 제출시 (20점)
- 50% 미만 제출시 (15점)
- 미제출시 (10점)</td><td></td></tr>
<tr><td colspan="2">해외규격인증
획득 노력</td><td>10점</td><td>•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2회 이상(5점), 1회(3점), 이수이력 없음(2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컨설팅* 지원 참여이력 (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1회 이상(5점), 참여이력 없음(3점)
* 현장방문형 컨설팅, 공급망실사 컨설팅 등</td><td></td></tr>
<tr><td colspan="2">매출액 증감률</td><td>15점</td><td>•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10% 이상(15점), 5% 이상(12점), 0% 이상(9점), 감소(6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 중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12점</td><td></td></tr>
<tr><td colspan="5">튼튼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5점 만점 부여</td><td></td></tr>
<tr><td rowspan="6">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50점)</td><td rowspan="4">수출
다변화
가능성
(30점)</td><td>수출
증감률</td><td>12점</td><td>• 직접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table><tr><td>구분</td><td colspan="4">전년도 직접수출 증감률</td></tr><tr><td>분포
구간 (%)</td><td>0이하</td><td>40이하</td><td>100이하</td><td>100초과</td></tr><tr><td>점수</td><td>5</td><td>7</td><td>10</td><td>12</td></tr></table>*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7점부여</td><td></td></tr>
<tr><td>수출실적
증감</td><td>6점</td><td>• 직접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6점), 10만불 이상(4점), 0불 이상(3점), 감소(2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3점부여</td><td></td></tr>
<tr><td>수출국
증가</td><td>6점</td><td>•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6점), 2개국 이상(4점), 1개국 이상(3점), 증가 없음(2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3점부여
** 관세청 직접수출액 확정통계 조회기준</td><td></td></tr>
<tr><td>신시장
진출</td><td>6점</td><td>•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 및 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6점), 1개국(4점), 신규수출국 인증 없음(2점)
* EU인증 신청시 가점 1점 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IECEE 등) 및 ESG·탄소중립 관련인증 신청시 가점 1점 부여(내수기업에 한함)</td><td></td></tr>
<tr><td rowspan="2">수출의지
(20점)</td><td>수출업무
담당자
역량</td><td>5점</td><td>• 수출관련(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음(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수료증 2건 이상(5점), 수료증 1건(3점), 이수이력 없음(0점)</td><td></td></tr>
<tr><td>수출준비
활동</td><td>15점</td><td>•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홈페이지(외국어) 보유,
외국어 카탈로그, 제품 홍보 동영상 보유
- 상기 항목 중 3개 이상(15점), 2개(12점), 1개(9점), 미 준비(6점)</td><td></td></tr>
<tr><td colspan="5">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유효기간 내) 선정기업의 경우 수출의지 점수 20점 만점 부여</td><td></td></tr>
<tr><td colspan="3">총 계</td><td>100점</td><td></td><td></td></tr>
<tr><td colspan="3">지방소재기업(3점)</td><td>3점</td><td>-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td><td></td></tr>
<tr><td colspan="3">가점(15점)</td><td>15점</td><td>-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 기업, AEO공인기업, 신남방·신북방 인증 신청기업, ESG·탄소중립 인증 신청기업, 원전분야 인증, 소부장으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건당 5점, 최대 15점)</td><td></td></tr>
</table>